

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사건번호	접수일 년 월 일	처리기간: 전유부분은 60일(공용부분은 90일) 한차례만 30일 연장 가능	
신청 구분	[] 전유부분 [] 공용부분		
대상 시설	건물명칭	층수	용도
	주소		
	① 건축허가일(사업 계획승인일)	년 월 일	분양자
	② 사용승인일(사용 검사일)	년 월 일	시공자
③ 전유부분 인도일	2013년 6월 19일 이후에 사용검사(승인)한 경우: 년 월 일		
당사자	신청인	성명(상호)	개인: 생년월일 년 월 일
		주소	법인: 등록번호 -
	피신청인	성명(상호)	(전화번호 - -)
		주소	전화번호
신청내역	④ 하자 부위	하자내용	

※ 최대 10건 까지 가능

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9조제2항제4호 및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의 9제2항에 따라 위 대상 시설의 신청내역에 대하여 하자판정을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시·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

직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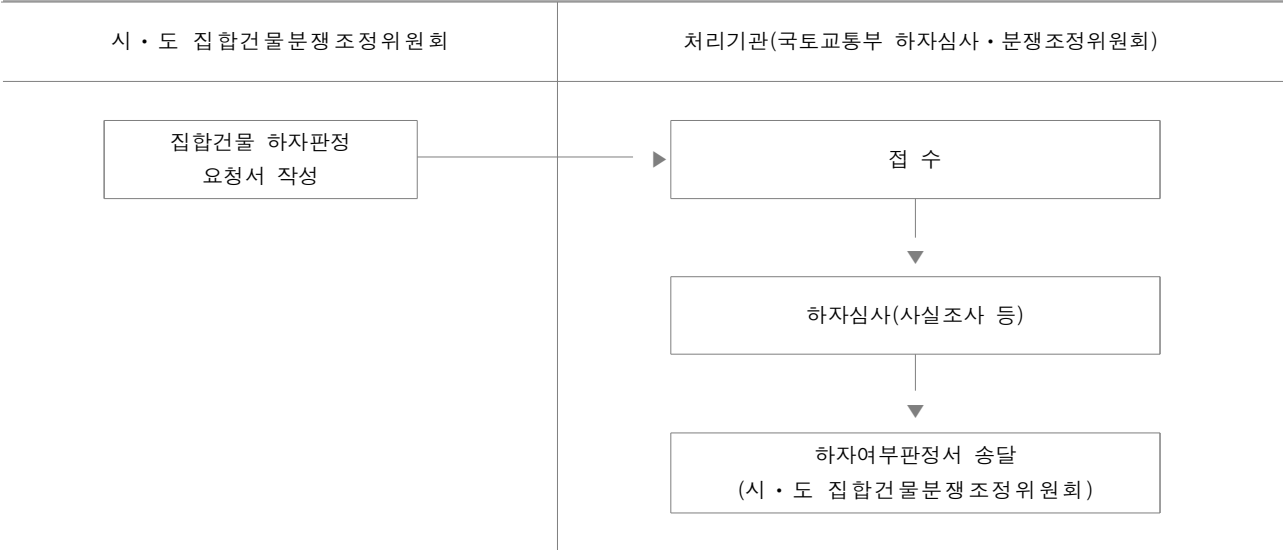
국토교통부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 귀중

첨부서류	1.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당사자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2. 그 밖에 하자판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1. ①은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허가일을, 공동주택단지안의 상가 등은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을 적습니다.
2. ②는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「주택법」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(임시 사용승인, 분할 사용검사, 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합니다)를 받은 집합건물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.
3. ③ 전유부분 인도일은 사실상 집합건물을 인도받은 날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(예: 세대키 수령일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)에는 해당 일자,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전입일, 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 등을 적습니다.
4. ④는 하자가 발생한 시설 부위(예: 욕실)를 적습니다.
5.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처리절차



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참고사항

